

이행강제금 부과기준 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이행강제금 금액
가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) 안전시설등의 작동·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)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3)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1항	200 600 1,000
나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6조제1항	1,000
다.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6조제1항	1,000
라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)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)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	법 제26조제1항	200 600

령을 위반한 경우		
3) 다중이용업소의 개수 ·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		1,000